

사단법인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문화예술봉사단메리”(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두며 국내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1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 적】

본회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 생산자가 곧 향유자가 되는 생활예술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이 연계된 문화예술공연을 실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 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이때 사업은 6개월 단위의 기수제로 운영된다.

1. 메리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공연사업
2. 메리콰이어 정기연주회 공연사업
3. 메리오케스트라와 메리콰이어 합동 공연 사업
4. 자선행사
5. 그 밖의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문화 예술 관련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 ①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6개월 단위로 갱신된다.

- ②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수료회원으로 구분된다.
- ③ 본회의 일반회원은 본회의 활동을 하는 자로서 회원의 자격 유지를 위해 회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④ 본회의 수료회원은 수료증을 받은 회원에 한하며 임명 즉시 수료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수료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별도의 선발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음 활동이 가능하다.

제6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 의사를 밝힘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회원본인의 탈퇴신고
- 2. 회원의 사망
- 3. 회원의 제명

제10조 【제 명】

- 1. 회원이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 또는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을 할 수 있다.
- 2. 회원의 제명에 관한 총회의 의결은 회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찬성으로 한다.

제11조 【회원의 재가입】

본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탈퇴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다. 단, 회원 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그 재가입이 결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임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1인
4. 주요 사업에 대하여 대표 1인을 둔다.
 - 1) 메리오케스트라 대표 1인
 - 2) 메리콰이어 대표 1인

제13조 【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장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장

기간 본회를 운영한 자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9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 【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2회 이상 주사무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장소에서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공지문을 온라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21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장기간 본회를 운영한 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4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 【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공지문을 온라인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최장기간 본회를 운영한 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 【 서면결의 】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 【 의결정족수 】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 【 이사회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 장 재산과 회계

제31조 【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3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 【회계의 공개】

-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 ②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결산 종료 후 3월말까지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9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0조 【사무국】

- ①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메리클로스란 이름의 사무국을 둔다.
-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사무국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1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4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5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13 제46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

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임기
이사장	박주영	19890908	서울시 관악구 국회단지18길 21, 202호	2년
이사	김재원	1995071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34가길 5, 2층	2년
이사	신민지	19960116	서울시 성북구 북악산로 746, 101-201 (정릉동, 우방아파트)	2년
이사	김수현	19950503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4길 6, 3동 1103호	2년
이사	최지혜	1992082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10길 38 남강하이츠빌라 401호	2년
감사	이금진	19970408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30나길33, 402호	2년

제5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성명	주소	날인
박주영	서울시 관악구 국회단지18길 21, 202호	
김재원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34가길 5, 2층	
신민지	서울시 성북구 북악산로 746, 101-201 (정릉동, 우방아파트)	
김수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4길 6, 3동 1103호	
최지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10길 38 남강하이츠빌라 401호	
이금진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30나길33, 402호	

